

제103회 이사회 의사록

제안자	대표이사 신 중 현	기록자	기획조정처장 서관수
일시	2006년 2월 9일(목) 11:00~12:00		
장소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119번지 한국가스기술공사 본사 회의실		
참석자	신중현, 양선장, 윤성로, 손범영, 김광수, 조병택, 이상헌		
불참자			
배석자	서관수, 김용대, 백동기, 홍광희, 이병호, 이호수		

소관	부의사항		회의결과
	의안번호	안건명	
기획조정처 "	제319호 제320호	4번 국도 관련 강제조정결정 수용안 전회이사회 부의안건 추진현황	원안의결 원안접수

첨부 : 이사회 의사록 1부. 끝.

2006년 2월 9일

작성자 기획조정처장 서관수

의 사 록

▣ 개회 선언(11:00)

기획조정처장 : 제103회 이사회 개회를 위한 성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법 제391조 및 정관 제28조에 의거 과반수 이사의 참석으로 이사회 결의를 위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오늘 이사회는 신종현 대표이사께서 의장직을 맡아 진행 해 주시겠습니다.

의 장 : 안녕하십니까? 신종현입니다.

우선 조직개편 이후 후속 인사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회사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주신 양선장, 손범영이사님과 윤성로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이사회는 지난 제102회 이사회시 간략히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난 2002년 1월 소송이 제기되어 약 5년간 지속되어온 “4번국도”관련 소송에 대한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송달 받은 후 2주내 이의신청하게 되어 있어 이사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국가스기술공사의 제103회 이사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이사회 부의안건은 『4번 국도 관련 강제조정결정 수용안』을 의결하고, 『전회이사회 부의안건 추진현황』을 이사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1호 안건 : 『4번 국도 관련 강제조정결정 수용안』

의 장 : 먼저 의안번호 제319호 『 4번 국도 관련 강제조정결정 수용안 』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광수이사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이사 : [4번 국도 관련 강제조정결정 수용안] 제안 설명

의 장 : 지금까지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사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영 이사 : 당사에서 수주한 최초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김광수 이사 : 약 100억원입니다.

손범영 이사 : 제가 아는 바는 최초의 계약금액은 그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공사가 시작되었으나 시공사의 요구로 몇 차례에 걸쳐 설계변경을 하여 약 100억원의 금액으로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또한 안건을 보면 원고측에서 약23억원으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의 강제조정 명령이 9억원으로 내려져 마치 소송금액을 현저히 낮추는 성과를 거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소송진행 막바지에 회사에서 법무과장(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적극 대처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은 인정합니다만 소송 초기대응이나 진행과정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소송이 종료된 후에는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김광수 이사 : 4번 국소 소송과 관련해서는 손범영이사님께서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전의 각하심이나 1심에서 대응을 좀더 잘했다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에는 저도 동감하여 회사의 임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 장 : 손범영이사님의 지적에 감사드리며, 저는 1심이 중간쯤 진행되었을때 부임하여 여러 가지로 자체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좋지 않은 결과를 얻어 이번 2심에서는 법무과장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이전 판결보다는 회사에 유리한 판정을 이끌어 내었지만 초기대응은 일부 부적절하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윤성로 이사 :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강제조정금액을 공탁을 하면 마성개발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은 없는 것입니까?

의 장 : 마성개발의 채권단에서 제기한 소송이고 소송 가액 보다 마성개발의 채권단의 채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소송 종료후 채권단에서 금액을 분배하게 됩니다.

손범영 이사 : 이 문제는 소송이 종료됨으로 인하여 모든 상황이 종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종료후 그간 대응과 문제발생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긴 소송기간동안 담당자가 수차례 바뀌는 등 우여 곡절이 많았지만 면밀한 조사를 통한 진위를 가려야 할 것입니다.

의 장 : 여러이사님들의 의견을 참조하여 소송이 종료된다면 철저한 조사를 통한 과실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에 근거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동 안전에 대하여 원안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제2호 안건 : 『전회이사회 부의안건 추진현황』

의 장 : 다음은 의안번호 제320호 『전회이사회 부의안건 추진현황』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광수이사께서는 제102회 이사회 결과와 이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이사 : [전회이사회 부의안건 추진현황] 주요내용 설명

의 장 : 이사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일 동 : [의견 없음]

의 장 :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접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 장 :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103회 이사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 폐회 선언 (12:00)